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9호 2018. 03. 29.(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8-62호 근명 용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사-2
- 사천시 고시 제2018-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사항 고시-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8-44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49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62호

곤명 용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곤명 용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1. 사업명칭 : 곤명 용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49호(3)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합 계			5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371	
	문화커뮤니티센터	건축 연면적 A=99.96m ²	315	
	무선방송시스템	30가구	36	
	마을 CCTV 설치	4개소	20	
지역역량 강 화	소 계		67	
	주민교육	1식	24	
	컨설팅	1식	10	
	마을동아리 지원	1식	33	
부대비용	소 계		62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2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동	지번		대	장	편	입	성명	주 소		
1	용산리	151-2	답	841	841	사천시					

※ 관련 도서는 사천시청 4층 지역개발과(055-831-3242)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49호(4)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 - 64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3. 26.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10호(2017. 12. 1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경남지부 강상헌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해안관광로 339(송포동)
3. 공사 내용
 -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위치표시용 부표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26-12번지선 공유수면
5.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18. 03. 26.

사 천 시 공 보

제549호(5)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 - 44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3. 2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3. 29. ~ 2018. 4. 13.(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5나8285	BMW 745LI	주*기	2018. 3. 23.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49 호 (6)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